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식품위생법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내 용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및 제89조 [별표23]의 II.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4)에 따르면 단란주점영업자¹⁾ 및 유흥주점영업자²⁾는 손님을 피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1차:영업정지 15일, 2차:1개월, 3차:3개월)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의 I.일반기준 제4호, 제5호 및 제15호 바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가중처분)하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 상

1)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자

2)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자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해 영업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동구 및 서구에서는 관내 경찰서로부터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적발 통보될 경우, 영업자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동구○○○(○○○○과)에서는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한 ‘○○’에 대하여 의견 제출(기소유예에 따른 감경 요청, 2014. 11. 10.)을 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14일 이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28일이 경과된 후에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2014. 12. 18.)’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과)에서는 손님을 피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 ○○○’ 등 4개 유흥주점에 대하여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이 명백하고, 또한 반복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기에 의견 제출을 받은 이후 14일 이내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검찰처분 시까지 처분 유보한 이후 검찰처분(벌금형, 기소유예 등) 결과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는 등 행정처분을 지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서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